

수 원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09가단80381 구상금
원 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
서울 서초구
대표자 이사 이○○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○○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○○

피 고 화성시
대표자 시장 최○○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□□
담당변호사 전○○

변 론 종 결 2010. 5. 17.
판 결 선 고 2010. 6. 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5,855,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. 7. 28.부터 2010. 6. 3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80%는 원고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71,348,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. 7. 28.부터 이 사건 소장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A은 2006. 8. 27. 18:20경 화성시 □□동 삼성메디칼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B 주식회사 소유의 경기00바0000호 버스(이하 '가해차량'이라고 한다)를 운전하여 현대 아파트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, 그 곳 인도를 이용하여 보행하다가 전방에 공사 중인 관계로 통행이 불가능하여 잠시 차로상으로 내려와 걸어가고 있는 C을 가해차량의 우측면 적재함이 열려 있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C으로 하여금 좌측 3, 4수지 중위지 개방성골절, 좌측 수근부 유구골골절, 우측 수근부 대다각골골절, 좌측 중수골골절, 뇌진탕, 우측 견봉 쇄골간관절1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.

나. 원고는 B 주식회사와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, 피고는 위 편도 3차선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.

다. 원고는 2006. 11. 3.경~2007. 9. 27.경 사이에 C의 치료비로 합계 6,204,700원을 지급하였다. 그런데 C과 그의 처인 D 및 C의 자녀들인 E, F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

양지방법원 2007가단000000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여 2009. 7. 1. '원고는 C에게 59,452,123원, D에게 1,000,000원, E, F에게 각 500,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. 8. 27.부터 2009. 7. 1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고,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2009. 7. 22.경 C 등에게 위 판결에 기한 손해금 70,914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라. 한편, 원고는 2009. 7. 27.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000000호 손해배상 청구에 응소하면서 변호사비용으로 2,157,100원을 지출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이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, 갑 제1~4호증, 갑 제5호증의 1~10, 15, 16, 17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갑 제5호증의 11~14, 을 제4호증의 1, 2, 3의 각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(1) 영조물인 위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위 인도에 보행자의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차도 방면으로 임시보행로를 만들고 차도와 임시보행로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도로의 설치·보존상의 하자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.

(2) 이에 보행자인 C이 위 인도의 보행이 불가능하자 차도로 내려와 차도를 보행하던 중 가해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, 결국 위 교통사고는 G의 안전운전의무위반과 위 도로의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.

(3)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C 등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데, 원고가 C

등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가 면책되었고,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이 1:9라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71,348,220원(=치료비 6,204,700원+손해배상금 70,914,000원+변호사비용 2,157,100원)×피고 책임비율 90%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

(1) 2006. 8. 14.경 위 도로상의 공사는 이미 완료되어 위 교통사고 당시에는 일체의 도로공사가 없었고, 위 인도 우측에는 공터가, 좌측에는 철제 휨스가 각 설치되어 있었으며, 위 교통사고 전날 비가 많이 온 관계로 공터에 있는 흙이 일부 인도에 흘러 내려왔을 뿐이었음에도 C이 차도로 내려와 차도를 보행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도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.

(2) 가사 도로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은 9:1로 봄이 상당하다.

3. 판단

가. 위 교통사고 당시 인도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

갑 제4호증, 갑 제5호증의 15의 각 기재, 갑 제5호증의 11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000000호 사건의 진행 당시 원고의 소송고지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를 한 점, 위 사건의 판결서에도 인도 공사 중으로 통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, 위 교통사고를 조사한 사법경찰관도 위 인도의 공사로 통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점, C도 인도가 끊어져서 보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차로상으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이 인정되고, 갑 제5호증의 17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

을 제4호증의 1, 2,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,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, 위 교통사고 당시에 인도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.

나. 공동불법행위

위 인도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이상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위 인도 옆에 임시통행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, 위 도로상의 공사가 제3자에 의하여 급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로서는 임시통행로의 설치 및 펜스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, 따라서 위 교통사고는 A의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과 위 도로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와 피고는 C 등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다.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

위 교통사고의 경위, 위 도로의 하자 정도 및 A의 운전의무위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할 때,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은 8:2로 봄이 상당하다 (따라서 위 인정비율과 다른 취지의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은 이유가 없다).

라. 소결론

한편 원고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C 등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였다는 점과 그 배상액이 정당하다는 점을 피고가 인정하고 있고,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이 8:2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15,855,160원(=치료비 6,204,700원+손해배상금 70,914,000원+변호사비용 2,157,100원)×피고의 책임비율 20%)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. 7. 28.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. 6. 3.까지

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.

판사 이종민 _____